E - 102 - 2021

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동현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동현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o 개정자: (전)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상원

ㅇ 제정경과

- 1999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1999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7년 10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7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1년 9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ㅇ 관련규격

- IEC 60364-4-41 (2005): Low-voltage electrical installations Part 4-41: Protection for safety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
- IEC 60364-5-54 (2005):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Part 5-54: Selection and erection of electrical equipment - Earthing arrangements, protective conductors and protective bonding conductors
- IEC 60449 amendment 1 (1979): Amendment 1, Voltage band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
-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핸드북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(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설명서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102 - 2021

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.) 제302조 (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)의 규정에 따라,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설비와 접지도체의 선정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사업장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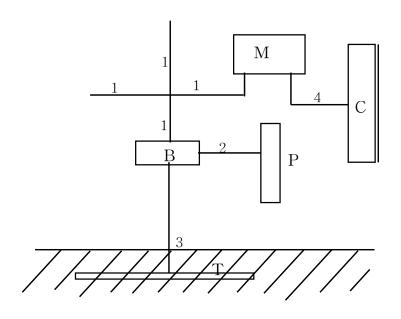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접지도체"라 함은 피접지물을 접지전극이나 접지모선에 접속하기 위한 도체를 말한다.
- (나) "접지전극"이라 함은 피접지물을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 한 도체를 말한다.
- (다) "등전위본딩"이라 함은 등전위성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부분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한 것을 말한다.
- (라) "보호 등전위본딩"이라 함은 감전보호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실시한 등전위본딩을 말한다.
- (마) "기능접지"라 함은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접지를 말한다.
- (바) "노출 도전부"라 함은 접촉우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도전성 부분으로 정상상태에서 는 충전되지 않으나 기능절연이 고장이 날 경우에 충전되는 부위를 말한다. 다만,

E - 102 - 2021

노출 도전부와의 접촉에 의해서 충전부가 되는 전기기기의 도전부는 그 자체를 노출 도전부로 보지 않는다.

- (사) "계통외부 도전부(Extraneous conductive part)"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나, 국부적인 전위상승이 유도되기 쉬운 전기설비 외부의 도전부를 말한다.
- (아) "PEN 도체(Protective and neutral conductor)"라 함은 중성점접지와 보호접지의 기능을 겸한 접지도체를 말한다.
- (자) "TN 계통"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 시키고, 전기기기의 접지는 전원측 접지전극에 접지도체로 접속한 방식을 말한다.
- (퍼) "TT 계통"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 시키고, 전기기기의 접지는 이와는 별도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(허) "IT 계통"이라 함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서 격리시키거나 한 점에서 고 임피던스로 접지시키고, 전기기기의 도전부는 독립접지 또는 공통 접지한 방식을 말한다.



1 : 접지도체

2 : 등전위본딩 도체

3 : 접지선

4: 보호 등전위본딩 도체

B : 주 접지단자 M : 노출 도전부 C : 계통외부 도전부

P: 금속 수도배관

T: 접지전극

<그림 1> 접지선 및 접지도체의 예

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E - 102 - 2021

4. 접지설비

4.1 일반사항

- (1) 전기설비의 요구사항에 따라 접지설비는 감전보호(이하 "보호"라 한다.) 및 기능 상의 목적을 겸하거나 각각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.
- (2) 접지설비는 다음에 적합하도록 선정 및 시공을 한다.
 - (가) 접지저항 값은 안전보건기술지침 "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 침" 부록에 의하여 계산하고, 전기설비의 보호 및 기능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 도록 시공한다.
 - (나) 지락전류 및 대지누설전류의 열적, 기계적 충격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.
 - (다) 염해 등과 같은 외적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갖도록 설치하고, 추가로 전 선관 등을 설치하여 기계적인 방호를 한다.
- (3) 전해작용에 의해 다른 금속제 부분의 손상위험이 없도록 방식조치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한다.

4.2 접지전극

- (1) 접지전극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
 - (가) 봉상전극
 - (나) 망상전극
 - (다) 판상전극
 - (라) 기초에 매입한 접지전극
 - (마) 콘크리트의 철골
 - (바) 금속제 수도관설비, 다만 4.2(5)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- (사) 기타 적절한 지하구조물, 다만 4.2(6)항에 의한 금속제 배관은 사용할 수 없다.
- (2) 접지전극의 효과는 그 토지의 토양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, 토양조건 및 접지저 항 값에 따라 접지전극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E - 102 - 2021

- (3) 접지전극의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상태 및 동결상태에 따라 접지저항 값이 증가되지 않도록 시공하고,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 - (가) 접지전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,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.
 - (나)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전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.75 m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발전소·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접지극을 별도의 안전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(다)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접지전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.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 서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.
- (4) 접지전극의 재료와 구조는 부식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선정하고, 접지설계 시에는 부식으로 인해 접지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.
 - (가) 접지전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설치는 피해야 한다.
 - (나)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전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한다.
 - (다) 콘크리트 기초 접지전극에 접속하는 접지선이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 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.
- (5) 금속제 수도관설비를 접지전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의 동의를 얻고, 수도관설비의 어떠한 변경공사 시에도 상호 연락하여 협조를 한다.
- (6) 인화성 액체나 가스 등의 금속제 배관설비는 보호접지용의 접지전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보호등전위본딩(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)은 예외로 한다.
- (7) 케이블의 납 외장이나 기타 금속제 피복은 부식에 의해 현저한 열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접지전극으로 사용 가능하며, 이 경우 케이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, 접지극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블의 변경공사 시에 상호 연락하여

E - 102 - 2021

협조를 한다.

4.3 접지선

- (1) 접지선은 4.5.1항에 적합하여야 하며, 큰 고장전류가 접지선을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구리는 6 ㎡ 이상
 - (나) 철제는 50 ㎡ 이상
 - (다)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m 또는 철 5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2) 접지선과 접지전극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,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, 압착접속,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. 다만,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관 등의 접지전극이나 접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4.4 주 접지단자

- (1) 다음의 도체를 접속하기 위하여 주 접지단자를 설치한다.
- (가) 접지선
- (나) 보호도체
- (다) 등전위본딩 도체
- (라) 필요한 경우 기기용 접지선
- (2) 주 접지단자는 접지선의 분리 또는 접지설비의 점검시에 작업자가 접근 가능하 도록 설치한다.
- (3) 주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, 이 단자부는 공구 등에 의해서만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E - 102 - 2021

(4) 주 접지단자는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 및 전기적인 연속성을 유지한다.

4.5 보호도체

4.5.1 최소 단면적

(1)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거나 (2)의 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(2)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$$S = \frac{\sqrt{I^2 t}}{b} \qquad \dots \tag{1}$$

이때, 이식은 차단시간이 5초 이하에서만 적용한다.

여기서, S: 단면적 (m²)

I: 보호 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무시 가능한 임피던스에 대한 예상 고장전류 (실효값) (A)

t: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작동시간 (s)

k: 보호도체, 절연,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-5-24(저압전기설비-제5-54부: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-접지설비 및 보호도체)의 부속서 A(시간보호에 관한 규정)에 의한다.

(2)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 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.

<표 2>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

선도체의 단면적 S (㎜, 구리)	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$S(mm, 구리)$	
	보호도체의 재질	
	선도체와 같은 경우	선도체와 다른 경우
$S \leq 16$	S	$(k_1/k_2) \times S$
$16 < S \le 35$	16 ^a	$(k_1/k_2) \times 16$
S > 35	S ^a /2	$(k_1/k_2) \times (S/2)$

여기서.

k₁: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-5-54(저압전기설비-제5부-54부:전기

E - 102 - 2021

기기의 선정 및 설치-접지설비 및 보호도체)의 표 A54.1(여러 가지 재료 변수 값) 또는 KS C IEC 60364-4-43(저압전기설비-제4부-43부:안전을 위한 보호-과전류에 대한 보호0의 표 A43(도체에 대한 k값)에서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

k2: KS C IEC 60364-5-54(저압전기설비-제5부-54부: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-접지설비 및 보호도체)의 표 A54.2(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값)~A54.6(제시된 온도에서 모든 인접 물질에 손상 위험성이없는 경우 나도체의 k값)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

k3: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(KS C IEC 60364-5-52(저 압전기설비-제5-52부: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-배선설비)참조).

- (3) 4.5.1(1)항의 식에 의한 계산 값이 표준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위의 표준규격에 해당하는 단면적의 도체를 사용한다.
- (4)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<표 2>에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<표 2>에서 적용한 값이 표준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위의 단면적 도체를 사용한다.
- (5)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 또는 케이블 외함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단면적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한다.
- (가) 기계적으로 방호가 되어 있는 경우 : 2.5 때 구리/16 때 알루미늄
- (나) 기계적으로 방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: 4.0 ㎜-구리/16 ㎜-알루미늄
- (다)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,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

4.5.2 접지도체의 종류

- (1) 접지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 - (가) 다심케이블의 도체
 - (나) 충전용 도체와 공통의 외함에 수납된 나도체나 절연도체
 - (다) 고정 배선한 나도체나 절연도체
 - (라) (2)의(가), (나)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 케이블 외장, 케이블 차폐, 케이블 외장, 전선묶음(편조 전선), 중심도체, 금속판

E - 102 - 2021

- (2)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,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 가 포함된 경우,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접지도 체로 사용이 가능하다.
 - (가) 구조·접속이 기계적,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인 열화에 대하여 보호되도록 전기 적인 연속성을 가진 것
 - (나) 도전성이 4.5.1항에서 요구하는 값 이상인 것
 - (다) 접지 탭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접지도체를 접속할 수 있을 경우
- (3)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는 계통외부 도전부를 접지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.
- (가) 기계적,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인 열화에 대해서 방호되도록 전기적인 연속성을 구조나 적당한 접속에 의해 확보된 것
- (나) 도전율 및 굵기가 4.5.1항에서 요구하는 값 이상일 것.
- (다) 특별한 수단이 없이는 제거되지 않도록 조치된 것
- (라) 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수도관설비는 수도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금속제 수도관을 계통외부 도전부로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가스용 배관은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4) 계통외부 도전부를 PEN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4.5.3 보호도체의 전기적인 연속성의 유지
 - (1)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.
 - (가) 기계적인 손상, 화학적인 열화 및 전기역학적인 작용에 대하여 접지도체를 적절히 방호하도록 한다.
 - (나) 나사접속·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 은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.
 - (다)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된다.
 - (라)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해서는 안된다.
 - (2)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 및 시험을 위해서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 다만,

E - 102 - 2021

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
- (가)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
- (나)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
- (다) 금속관,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
- (라)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
- (마) 용접이나 경납땎에 의한 접속부
- (바) 압착공구에 의한 접속부
- (3) 보호도체에는 개폐기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공구의 사용에 의해서만 분리될 수 있는 시험용 접속부는 설치할 수 있다.
- (4) 접지의 전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, 전용장치(예를 들면 작동센서, 코일)는 보호도체에서 직렬로 연결하면 안 된다.
- (5) 4.5.2(2)항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기타기기의 접지도체의 일부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4.6 보호접지 도체

- (1) 감전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용 도체를 동일 배선계통의 상도체 또는 인근의 상도체와 같이 시설한다.
- (2) 전압작동형 누전차단기에 대한 접지 및 접지도체
 - (가) 보조접지전극은 기타 접지된 금속체, 배관, 금속외장케이블 등과 전기적으로 독립이 되도록 한다.
 - (나) 보조접지전극에 연결된 접지선은 접지도체 또는 그것과 접속하고 있는 부분이 나 기타 도전부에서 접지도체와 접촉하고 있거나 또는 그 위험이 있는 부분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을 한다.
 - (다) 지락고장시에 지락계전기를 작동시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접지도체에 접속을 한다. TN, TT 및 IT 계통에서의 접지 보호장

E - 102 - 2021

치는 안전보건기술지침 "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"을 참조한다.

5. 보호 및 기능을 겸한 접지 도체

5.1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호접지를 우선으로 한다.

5.2 PEN도체

- (1) TN계통의 고정배선설비에 있어서 동선의 단면적이 10 m 이상 또는 알루미늄선의 단면적이 16 m 이상이고, 해당 전기설비가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도체를 접지도체와 중성선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(2) 표류전류(Stray current)의 발생으로 인하여 PEN도체에서 전격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이 최대전압에 대한 절연을 한다.
- (3) 중성선 및 접지도체를 별개의 도체로 하는 경우 각각의 도체를 상호 접속하여서 는 안 되며, 그 분기장소에 있어서 접지도체 및 중성선용의 단자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 PEN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에 접속한다.

6. 보호 및 계통을 겸한 접지 도체

- 6.1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접지도체(중성선과 겸용, 선도체와의 겸용, 중간도 체와의 겸용 등)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- 6.2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
 - (1) 단면적은 구리 10 때 또는 알루미늄 16 때 이상이어야 한다.
 - (2)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된다.

E - 102 - 2021

- (3)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6.3 겸용도체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.
 - (1) 정격전압과 같거나 절연성능이 높아야 한다.
 - (2) 배선설비의 금속 외함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 다만 KS C IEC 60439-2 (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-제2부: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))에 의한 것 또는 KS CIEC 61534-1(전원트랙-제1부:일반요구사항)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.
- 6.4 겸용도체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 - (1)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, 중간도체, 선도체 및 보호도체가 별도로 배선되는 경우, 중성선, 중간도체, 선도체를 전기설비의 다른 접지된 부분에 접속해서는 안된다. 다만 겸용도체에서 각각의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와 보호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한다.
 - (2)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.
 - (3) 계통외 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
7. 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단면적

- (1)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의 최대단면적의 1/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- (가) 구리도체 6 m²
- (나) 알루미늄 도체 16 ㎡
- (다) 강철 도체 50 m²

E - 102 - 2021

- (2)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본딩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도체 25 m²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.
- (3)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보조 등전위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그 노출 도 전부의 양측에 접속된 접지도체의 작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.
- (4) 노출 도전부와 계통외부 도전부를 접속하는 보조 등전위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당해 설비에서 사용하는 접지도체의 단면적 1/2 이상으로 하되 4.5.1(3)항에 적합하도록 한다.
- (5)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보조 등전위본 당 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.
- (가)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.5 때, 알루미늄 도체 16 때
- (나)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때, 알루미늄 도체 16 때
- (6) 보조 등전위본딩은 금속구조체 등 연속성이 있는 계통외부 도전부나 보조도체 또는 그들을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(7) 물과 상시 접촉하여 감전의 위험이 높은 배수용 펌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금속 제 배관을 접지전극이나 접지도체로 활용하여 크로스 본딩(Cross bonding)을 하고, 등전위본딩 도체 또는 기능용 접지선은 적절한 단면적을 갖도록 한다.

E - 102 - 2021

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:

○ 개정자 : 최상원

○ 개정사유 :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○ 주요 개정내용

- 4.2 접지전극 시공조건 내용 추가

- 4.3 접지선의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을 반영한 개정

- 4.5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선정방식을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을 반영한 개정

- 6. 보호 및 계통을 겸한 접지 도체 내용 추가

- 7. 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단면적의 내용 추가 및 구체화